

2005 지방공기업 경영지원 방향

유 상 수

행정자치부 경영지원과장

I. 머리말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일상 생활에 직결됨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지난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이후 상·하수도, 공공의료, 도시철도 등 사업분야에서 민간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는 지방공기업에 주40시간근무제 도입과 제7차 지방공기업법 개정, 그리고 공공부문 혁신의 물결에 합류하는 등 지방공기업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의 한해였다.

특히 금년 1월 28일 제2회 지방공기업의 날을 맞이하여 고객만족과 성과위주의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공기업 혁신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바도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지방공기업은 권한과 책임이 함께하는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실효성있는 경영혁신방안을 모색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상시적인 경영혁신체제에 구축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유재산도 능률적인 관리위주로 대대적인 제도개선안을 작년에 마련하여 올해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방세외수입분야는 지난해 다양한 연구활동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제도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II. 지방공기업 운영실태

1. 지방공기업 기본현황

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현황

지방공기업은 2004. 6. 30현재 총 351개로 상·하수도 등 공무원이 운영하는 직접경영사업이 199개이고 공사·공단을 비롯한 간접경영형태가 152개로, 이는 1997년 256개보다 95개가 늘어난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추구하는 경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시설공단분야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현황〉

사 업 별		'04	'97	증감
계		351	256	95
직접 경영 사업	소 계	199	171	28
	상 수 도	103	90	13
	하 수 도	40	19	21
	공영개발	41	47	△6
	지역개발기금	15	14	1
	지하철건설	-	1	△1
간접 경영 사업	소 계	152	85	67
	지방공사	67	61	6
	지방공단	54	12	42
	주식회사	31	12	19

나. 지방공기업 재무 및 경영성과

지방공기업 재무상태는 2003년도 결산기준으로 볼 때 자산 62조 2,387억원, 부채와

자본은 21조 5,146억원과 40조 7,24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52.8%이다. 이는 1997년도 110.6%보다 57.8%가 감소한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는 매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는 2003년도 결산 결과 5,0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상·하수도, 공영개발 및 지역개발기금 등 직영기업분야에서는 2,7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반면에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는 7,7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내었는바, 이는 5개 지하철공사에서 발생한 8,285억원과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서 발생한 400억원의 적자를 제외한다면 952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지하철공사와 의료원 분야를 제외할 경우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3,6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이고 있는 셈이 된다.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건설 시 발생하는 엄청난 건설비용의 부채원리금을 지방공사 설립과 동시에 이관되어 원리금상환에 따른 부담과, 원가의 50%수준에 불과한 요금체계 등에 기인한 것이며, 의료원의 경우에는 1998년도 20억원, 1999년도 73억원에 불과하던 경영적자가 1999. 11월 의약품실거래상환제 시행과 2000. 7월 의약분업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200여억원의 약품판매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예산규모는 2003년도 결산기준으로 23조 2,263억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8조 7,840억원이며, 자본예산은 14조 4,423억원이다.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2003년말현재, 단위 : 억원)

공기업명	자 산	부 채 (부채비율)	자 본	경영성과	예산액
합 계	622,387	215,146 (52.8)	407,241	△5,010	232,263
소 계 (직영기업)	392,948	109,627 (38.7)	283,321	2,723	142,521
상 수 도	175,410	25,901 (17.3)	149,509	2,373	47,921
하 수 도	109,338	13,007 (13.5)	96,331	△1,042	26,145
공 영 개 발	38,742	14,024 (56.7)	24,718	653	22,266
지역개발기금	69,458	56,695 (444.2)	12,763	739	46,189
소 계 (공사·공단)	229,439	105,519 (85.2)	123,920	△7,733	89,742
지 하 철 공 사	135,411	68,370 (102.0)	67,041	△8,285	37,698
지방공사의료원	7,120	3,208 (82.0)	3,912	△400	6,747
도시개발공사	66,940	28,701 (75.1)	38,239	1,199	34,139
시설관리공단	7,602	2,780 (57.7)	4,822	△98	6,867
주차관리공단	4	2 (80.9)	2	-	16
기 타 공 사	12,362	2,458 (24.8)	9,904	△149	4,275

※ 제3섹터 : 자산 1조691, 부채 5,996, 자본 4,695, 경영성과 △142은 미포함

다. 지방세외수입 현황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하며 일 반회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특별회계로는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구분된다.

2003년말 총계 기준으로 지방세외수입은 59조 936억원으로 2003년도 지방재정 총규모 152조 9,850억원의 38.6%를 차지하고 있

〈최근 10년간 세외수입의 지방재정 비중〉

구분 세입별	연도	액 (억 원)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계		483,178	580,387	766,903	666,259	697,086	904,545	960,544	1,159,589	1,340,911	1,529,850
(비율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세외수입		254,828	310,679	370,333	363,119	345,738	344,228	353,540	410,044	482,859	590,936
(비율 %)		(52.7)	(53.5)	(48.3)	(54.5)	(49.6)	(38.1)	(35.4)	(35.4)	(36.0)	(38.6)
지방세		132,286	153,169	173,965	184,977	171,483	185,686	203,616	266,649	315,258	334,312
(비율 %)		(27.4)	(26.4)	(22.7)	(27.8)	(24.6)	(20.5)	(20.4)	(23.0)	(23.5)	(21.9)
지방교부세		47,843	56,746	84,109	67,857	70,395	116,105	82,450	122,249	124,791	135,245
(비율 %)		(9.9)	(9.8)	(11)	(10.2)	(10.1)	(12.8)	(8.2)	(10.5)	(9.3)	(8.8)
보조금 등		48,221	59,793	138,496	50,306	109,470	258,526	320,938	360,647	418,003	469,357
(비율 %)		(10)	(10.3)	(18)	(7.5)	(15.7)	(28.6)	(32)	(31.1)	(31.2)	(30.7)

※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지방채는 보조금 등에 포함

다.

재산이 1.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확충이 가능한 사용료·수수료, 이자수입 등의 정상적 세외수입은 3조 7,98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외수입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라. 공유재산 현황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2003년말 현재 토지가 310만 필지에 73억㎡(22억 평)로 자산가치는 약 113조원(국토의 7.3%)이고, 건물은 65,385동에 33백만㎡(1천만 평)로 자산가치는 약 15조원이며, 기타 공작물 등은 약 14조원으로, 공유재산의 총 자산가치는 약 143조원 정도이다.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84.2%, 잡종재산이 14.1%, 보존

〈공유재산 내역별 현황〉

구 분	수 량	면적(천㎡)	금액(억원)
계			1,427,075
토 지	3,102,003 필지	7,326,327	1,128,676
건 물	65,385 동	32,817	153,498
기타 (공작물 등)			134,507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행정재산	120조 1,911억원	84.2%
보존재산	2조 3,795억원	1.7%
잡종재산	20조 1,369억원	14.1%

〈최근 10년간 세외수입 증가추세〉

(단위 : 억원)

區 分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계		254,828 (118)	310,679 (144)	370,333 (172)	363,119 (168)	345,738 (160)	344,228 (159)	353,540 (164)	410,044 (190)	482,859 (189)	590,936 (232)
일반회계	소 계	98,501 (118)	127,537 (153)	170,335 (204)	188,589 (226)	174,050 (208)	176,229 (211)	177,152 (212)	196,366 (235)	233,433 (237)	329,427 (334)
	경상·적수입	23,373 (148)	30,265 (191)	38,496 (243)	42,622 (269)	37,330 (236)	40,216 (254)	30,856 (195)	32,202 (204)	34,621 (148)	37,986 (163)
	임시·적수입	75,128 (111)	97,272 (144)	131,839 (195)	145,967 (216)	136,720 (202)	136,013 (201)	146,296 (216)	164,164 (242)	198,812 (265)	291,441 (388)
	소 계	156,327 (118)	183,142 (138)	199,998 (151)	174,530 (132)	171,688 (130)	167,999 (127)	176,388 (133)	213,678 (161)	249,426 (160)	261,509 (167)
	事業·收入	51,479 (124)	52,006 (126)	53,511 (129)	53,814 (130)	54,068 (131)	60,016 (145)	57,227 (138)	69,034 (167)	79,400 (154)	72,559 (141)
	사업·외수입	104,848 (115)	131,136 (144)	146,487 (161)	120,716 (133)	117,620 (129)	107,983 (119)	119,161 (131)	144,644 (159)	170,026 (162)	188,950 (180)

2. 주요성과

가.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였다. 주40시간근무제 도입으로 관광·레저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과 유원지시설 컨벤션센터, 숙박시설 등 관광사업도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주민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 사업의 투자재원확보 등을 위해 시·도가 운영하고 있던 지역개발

채권의 발행근거를 지방공기업법에 명시함으로써 근거규정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였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작성권과 지방공사의 사채발행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또한, 현재 자본금의 4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었던 사채발행 규모도 택지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향후 대통령령 개정시 이를 반영하여 사채발행 규모를 자본금의 10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내실화로 책임경영 강화

그동안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법령정비 등 제도적 개선과 병행하여 경영평가지표를 지속 보완하고 있으나 공기업 규모에 따라 평가 결과가 좌우되고 평가의 목적인 환류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에도 사업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설정 및 동태평가의 비중강화, 합리적인 평가군 설정, 유능한 지방대학 교수의 평가단 영입 등을 통하여 경영평가의 타당성을 더 한층시켰다.

경영평가제도의 주요개선사항으로는 첫째, 경영평가지표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경영개선실적에 대한 평가비율의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조직의 규모보다는 발전가능성에 대한 동태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 중복성이 있는 지표를 통·폐합하여 전체적으로 지표를 단순화하고 비계량지표 등급구간별 편차를 축소(3구간→4구간)해 나가고 둘째, 경영평가의 대상평가군을 전년대와 같이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도시개발, 지하철, 공단, 의료원, 기타공사 등 사업유형별로 구분하고 세부평가군을 인구 및 예산규모,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셋째, 경영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자치단체의 참여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전체 외부전문가의 20% 정도는 시·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지난해 5월에서 8월까지 실시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가~마급의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에 따라 임원은 150~450%, 직원은 100~300%범위 내에서 기

관성과급을 차등 지급토록 하였다.

다. 세외수입 확충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채납관리 업무의 전산관리를 위해 전 자치단체가 공동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4년말까지 202개 자치단체에 보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단체간 정보공유 및 유관 시스템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전국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정책결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징수율이 40%를 밑돌아 채납액의 누중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등 자동차관련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 고액·상습 채납자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시책』을 수립,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하였고, 특히 법무부에서 추진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여 온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세외수입 제도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생산적 활용 기반구축

현재 예산·회계·채권 및 공유재산, 물품

이 단일법령(지방재정법)에 혼재되어 그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다. 공유재산은 주인 없는 재산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활용가치 증대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재정확충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임대·매각 등은 타인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다툼이 잦고 쟁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재산의 종류별로 내용을 한곳에 정리하고 법안을 단순명료하게 정비하여 수요자의 이해편의를 제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생산적 활용도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확충을 이룩하고자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각 부처 의견조화, 입법예고 등을 거쳐 '04년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던바, 2005년 중 법안이 제정 시행될 것이다.

Ⅲ. 2005년 지방공기업 경영지원 방향

1. 지방공기업 자율·책임경영체제 강화

가. 지방공사·공단외 과감한 혁신추진

지방공사·공단의 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혁신은 그동안 정부주도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제도를 대부분 마무리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자율경영혁신체제로 전환하

여 공기업 스스로가 자체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자구노력을 통하여 경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사·공단의 CEO 및 경영혁신담당팀장, 자치단체 관계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4. 1. 28~1. 29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방공기업 혁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혁신대회는 지방공기업이 보다 강력한 고객위주의 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고자 혁신의 기본방향을 『효율적인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류 지방공기업 육성』으로 설정하고, '조직문화의 획기적 변화'를 통한 자율혁신 지속화 기반조성, '혁신네트워크와 경영정보화 바탕의 효율적인 혁신추진체계 구축', '고객과 성과중심의 경영혁신 평가시스템의 조기정착'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다.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10과제

- ① 『CEO 완결형 자율경영체제 구축』,
- ② 『공정성과 성과지향의 인사관리혁신』,
- ③ 『투명한 윤리경영 제도화』, ④ 『혁신추진 인적기반 확충』, ⑤ 『기업핵심역량 극대화』,
- ⑥ 『혁신 경영기법의 획기적 도입』, ⑦ 『상생차원의 신노사문화 정착』, ⑧ 『공공성 강화로 고객신뢰 제고』, ⑨ 『책임과 효율의 제3섹터 운영』, ⑩ 『경영평가와 보상·환류 시스템 연계』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혁신의 이행상황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로 경영혁신과제의 조기이행을 통해 지방공기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적인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방채 및 공사채 발행 요구액 삭감 등 재정폐널티 적용방안 등을 강구하며, 추진실적이 극히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 책임규명과 금년도 평가결과 등급구간을 하향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나. 실효성있는 경영진단 실시

2004년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은 금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기업을 대상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에 의해 해당공기업을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함으로써 해당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同 제도가 단순한 경영자 인사조치, 조직규모 축소 등 문책성 진단보다는 명실상부한 “부실공기업 경영클리닉”이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실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부실공기업의 회생력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경영개선명령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매년 추진실태의 확인과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경영개선명령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지난 1999. 1월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26개 부실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공기업 대표자 2명을 해임하고, 정원의 416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상당수 조직을 개편 등의 경영개선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 경영공시제도의 정착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공단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재무제표 등 주요정보를 홈페이지 등 주요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시제도는 공개기준이 명확하게 정하여지지 않아 일부 공기업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영공시제도를 통한 주민의 지방공기업 운영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금년에는 상하수도, 지하철, 의료원 등 지방공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공시자료의 규격화, 공시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공사·공단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연계, 경영성과를 게시토록 유도하는 한편, 공시사항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시항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시켜나갈 계획이다.

라. 신설공기업 운영 내실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지방공기업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영혁신제도의 도입이행

여부, 조직 및 인력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기업 설립시부터 각종 제도나 규정숙지 미흡으로 인한 운영미숙과 부실경영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2004년도 이후 설립 공기업에 대하여 금년 10월중에 지도·점검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공사·공단와 출자법인의 경영부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의 초과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체없이 주식의 처분,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출자법인에 대한 검사결과 부실경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강력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우리나라의 지방상수도사업은 167개의 특별·광역시와 시·군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과잉·중복투자, 단체간 지나친 요금격차, 영세단체의 과다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노정되어 지방상수도의 경영개선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부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혁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한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 지방상수도의 공사화 추진을 목표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상수도 보급률·유수율이 매우 낮고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의 타 공기업 위탁경영을 확대하는 한편, 검침업무 등 민간위탁 가능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일반회계방식으로 운영되는 64개 지방상·하수도사업에 대하여는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하는 지방직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정확한 원가산정을 통한 적정한 요금부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구현하고 사업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상·하수도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보제한, 전문직렬 신설 등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고, 종사자의 사기양양을 위한 각종 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바. 지하철 경영의 개선추진

지하철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으로 현재 서울(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공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이중 대전지하철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하철은 건설비용의 과다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매년 큰 폭의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부채의 원리금상환과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체계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하철 부채와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를 구분하여 건설부채는 건설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상향조정과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상환토록 하고 운영부채는 당해 지방공사 책임하에 해결해 나가되, 원가의 50%대에 불과한 지하철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비의 국비지원을 상향조정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건설부채를 점차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하철요금 현실화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요금을 단시간내에 현실화하기에는 서민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보여지나, 년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 제3섹터 법인운영 내실화

제3섹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출자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현재까지 31개 법인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성 검토미흡, 초기투자재원 확보곤란 등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상당수의 제3섹터 기업들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자체경영 혁신노력 등을 통해 적

자폭이 매년 감소 [△209('01)→△247('02)→△142('03)] 하고 있으나 지난해 제3섹터 법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아직도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청산 및 지분회수 등 조치를 권고해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10대 과제중 하나로 제3섹터분야를 설정하여 경영혁신토록 조치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의 관리를 통해 강력한 혁신을 독려할 계획이다.

2. 지방세외수입의 확충

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

2002년 이후 자치단체별 자율추진해 온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2005년부터 전국단위 5개년계획으로 일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 제공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목표인 지방분권 및 자율화의 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사용료 전종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투입비용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수수료 징수대상, 요금 결정기준, 표준요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수료에 관한 단일규정인 『자치단체 수수료표준요금규정』을 대통령령 형식으로 제정하여 원가변동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요금을 적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채납율이 60%에 육박하여 지방건전재정

확립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준법의식 해이 및 공권력 훼손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징수율 제고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공권력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징수율 60%를 목표로 2007년까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3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자치단체별로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집중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법이 정한 절차 내에서 엄격한 부과·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체납액은 반드시 강제징수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 신규 세외수입원의 적극 발굴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사무 중 다수사무가 수수료 징수근거의 미비 등의 이유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최소한의 행정처리 비용 징수 등 유료화 노력이 미흡하였고 아울러 행정환경변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한 신규업무가 발생함에도 세외수입 발굴노력이 미흡하여, 앞으로는 특정인에 이익이 수반되는 무료제공서비스의 유료화를 기하도록 유료화가능 무료사무의 일제조사와 처리비용분석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처리비용을 징수토록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처리하고 있음에도 국가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과태료·범칙금 등을 지방수입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라.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세외수입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처리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부과징수 과정의 탈루·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한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미보급 22개 자치단체에 확대보급하고 26개 기초자치단체와는 연계모듈을 개발하여 전 자치단체가 세외수입 정보를 공유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기 보급이 완료된 202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명실공히 지방 세외수입 정보에 대한 총괄 전산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공유재산 및 물품의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체계 확립

2005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면, 동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하여 법령체계 정비를 완료할 것이다. 또한, 그 세부적인 운용사항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지침』을 『공유재산관리기준』으로 변경 수립하되, 그 시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제정 운용 및 확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자산 운영의 새로운 방법과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노력할 것이다.

나. 공유재산 활용도 증대

지방자치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수적이며, 공유재산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소중한 자주재원인 것이다. 먼저,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정가격 책정시 감정가를 하한으로 시가를 감안하는 등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과 토지합필 및 지목변경 등을 통한 자산가치의 상승, 영구시설물 설치범위 확대를 통한 토지의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산업·연구시설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이용방안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다. 공유재산관리 전문인력 육성

지방행정 수행의 주요한 물적수단인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대한 재산의 매각, 대부관리, 소송, 실탁조사 등 그 업무가 과중하여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순회교육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을 증대토록 할 것이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활용을 통한 수입 증대 및 지출 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고 있는바,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활성화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욕을 고취하

여 공유재산의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할 예정이다.

라. 물품관리의 효율화 추진

현재 복식부기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발생주의 및 감가상각 개념을 적용한 물품관리체계를 정립할 것이며, 효율적인 관리·처분방안 개발을 통해 행정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사용 비중이 큰 고가물품 위주로 정수물품을 재지정하고 물품분류번호의 재구성, 내구년수의 조정 등 제도정비와 물품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행정력 소요를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품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IV. 맺음말

올해에도 우리 지방공기업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느 때 보다도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지방공기업은 강력한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그리고 화합과 협력의 생산적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경영의 자율과 함께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그 역할이

강조되는 지방세외수입분야의 발전, 특히 수 공유재산관리의 성과가 나타나는 한해가 될
수료분야의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것이며, 올해 공유재산법이 새로 제정되면

<참 고>

地方公企業 現況(總351個)

(1) 직접경영사업(199개)

(2004. 6. 30현재)

세부사업별	단체수	단 체 별
계	199	
상 수 도	103 (특·광역시 7, 시 76, 군 2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안산, 고양, 파천, 구리, 김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양주, 하남, 용인, 파주, 이천, 화성, 광주, 연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영월, 평창, 인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정선, 철원, 고성,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예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울진, 칠곡, 상주, 문경, 경산,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
하 수 도	4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의정부, 광명, 부천, 안산, 파천, 성남, 구리, 시흥, 포천, 오산, 여주, 군포, 춘천, 속초, 청주, 전주, 완주, 익산, 정읍, 목포, 순천, 나주, 영암,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창원, 진주, 진해, 김해, 마산, 제주
공영개발	41 (시도 6, 시군 35)	인천, 대구달성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전남(도청이전)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고양, 구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안성, 김포, 춘천, 원주, 속초, 강릉, 청주, 충주, 음성, 천안, 아산, 보령, 연기, 계룡, 익산, 목포, 순천, 광양,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
지역개발 기 금	15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간접경영사업(152개)

형태별	사업별	단체수	단 체 별
계		152	
지방 공사	소 계	67	
	지 하 철	5	서울(2), 대구, 인천, 광주
	의 료 원	3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이천, 안성, 포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순천, 강진, 목포,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도시개발	13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 타	11	서울농수산물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구리시), 경기관광공사, 광주지방공사, 평택항만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태백관광개발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청도공영개발공사, 용인지방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지 자 체 50% 이 상 출 자	4	지방공사인천터미널, 하남시개발공사, 장흥표고유통공사, 안성축산진흥공사
지방 공단	소 계	54	
	시설관리	51	서울,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용산구, 강서구, 동작구,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부산, 대구, 인천, 인천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대전, 울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과천, 고양, 용인, 파주, 안성, 김포, 오산, 화성, 연천군, 춘천, 동해, 속초, 구미, 창원, 김해, 거제, 부산환경, 대구환경시설, 광주환경시설
	주차관리	1	청주
	기타	2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주식 회사	소 계	31	
	지 자 체 25~50% 미 만 출 자	22	부산센텀시티(주),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부산관광개발(주), (주)대구전시컨벤션센터,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 코다개발(주), 인천도시관광,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주)대전농수산물유통센터, (주)효원, (주)안산도시개발, 부천카툰네트워크(주), 부천무역개발(주), (주)김포캐릭터월드, 청원레저(주), 삼교호합상공원, (주)전남무역, (주)경남무역, 가온소프트(주), (주)하미,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JS소프트
	지 자 체 25% 미 만 출 자	9	(주)테즈락스포츠, (주)티아이엔시, 한국씨이에스(주), (주)K3I, 파주시혼합사료(주), (주)아름다운인제관광, (주)경축, (주)경북통상, 농협대구경북유통(주),